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855호 - 베트남] 노조 설립 활발한 베트남 기업

작년부터 베트남 정부는 지역노조 및 산업노조를 통해 외국인 투자회사에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이므로 회사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작 베트남 노동법은 노동조합 설립을 지역노조 또는 산업노조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노동법 제153.1조). 즉 회사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회사는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노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는 지역노조 또는 산업노조가 노동조합 임시집행위원회를 설립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 활동을 한다(노동법 제153.1조). 즉 지역노조 또는 산업노조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설립된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노동조합을 세워야 하지만(시행령96 제3.1조) 6개월 내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으면 상급 노동조합이 회사 근로자를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에 임시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시행령96 제3.2조, 제4조). 임시집행위원회의 위원은 회사의 재직 근로자로 구성하되 필요하다면 상급 노동조합은 소속 전임자를 임시집행위원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시행령96 제6.1조)...(중략)

정정태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지성 베트남 법인장

- [제855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